

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특성화사업 추진 및 2016학년도 입시환경 분석을 통한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한 제 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개정
- 2)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양성과 실습을 통한 직업교육과정과 연계(전문대학 특성)로 직접 용역을 창출하여 대학 재정 수익에 기여하고자 함
- 3) 대학이 학교의 시설·인력을 활용하여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선·판매,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학교기업설립 가능으로, 학교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 '17년도 학교기업 신규선정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함.
- 4)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5년 9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령에서 명시한 대학도서관의 의무 수행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제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정보특전부사관과와 전투부사관과를 통폐합 하여 전투부사관과 정원 40명으로 함
- 2) 항공서비스과 3명을 감원함
- 3) 학칙에 학교기업의 소재지, 사업종목 및 관련 학과 교육과정을 명시함
- 4)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사항, 보상금 관련 사항 등을 학칙에 기재
- 5) 사업 신청시에는 반드시 학칙개정이 완료되어 개정된 학칙 사본을 첨부
- 6) 학칙에 제20장을 신설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- 7) 제89조 대학도서관 운영 전반, 제 90조 대학도서관 발전계획, 제91조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, 제92조 사서, 제93조 시설 및 도서관자료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

다. 주요토의과제 : 학과별 정원 조정사항 검토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고등교육법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,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,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,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, 대학도서관진흥법,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 해당학과 사전 정보 공유 및 의견 개진 완료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구 분	내 용						
현행	제5조(설치학과 및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	
	대계열분류	학부	모집단위(학과명)	입 학 정 원			수업연 한
				주	야	계	
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유아교육과	96		96	3
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사회복지과	100	27	127	2
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아동보육과	30		30	2
	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호텔관광과	70		70	2
	<u>인문사회</u>	<u>호텔관광외식학부</u>	<u>항공서비스과</u>	<u>33</u>		<u>33</u>	<u>2</u>
	자연과학	간호학부	간호학과	140		140	4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임상병리과	120		12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물리치료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방사선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기공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위생과	120		12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의무행정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안경광학과	79		79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식품영양과	60		60	2
	자연과학	호텔관광외식학부	외식조리과	90		90	2
	자연과학	한류예술학부	미용피부테라피과	95		95	2
	자연과학	군사학부	의무부사관과	70		70	2
	공 학	군사학부	전투부사관과	40		40	2
	<u>공 학</u>	<u>군사학부</u>	<u>정보특전부사관과</u>	<u>30</u>		<u>30</u>	<u>2</u>
	예·체능	한류예술학부	주얼리디자인과	30		30	2
				1,523	27	1,550	

구 분	내 용						
개정(안)	제5조(설치학과 및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	
	대계열분류	학부	모집단위(학과명)	입 학 정 원			수업연 한
				주	야	계	
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유아교육과	96		96	3
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사회복지과	100	27	127	2
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아동보육과	30		30	2
	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호텔관광과	70		70	2
	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<u>항공서비스과</u>	<u>30</u>		<u>30</u>	2
	자연과학	간호학부	간호학과	140		140	4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임상병리과	120		12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물리치료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방사선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기공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위생과	120		12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의무행정과	80		80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안경광학과	79		79	3
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식품영양과	60		60	2
	자연과학	호텔관광외식학부	외식조리과	90		90	2
	자연과학	한류예술학부	미용피부테라피과	95		95	2
	자연과학	군사학부	의무부사관과	70		70	2
	공 학	군사학부	전투부사관과	40		40	2
	<u>공 학</u>	<u>군사학부</u>	<u>정보특전부사관과</u>				
	예·체능	한류예술학부	주얼리디자인과	30		30	2
				1,490	27	1,517	

현행	개정 (안)																
제81조(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) ① 우리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각호와 같다. 1.~4. (생략) <신 설>	제81조(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) ①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WM베이커리</u>																
제82조(학교기업의 소재지) ① (생략) ② 원광보건대학교 WMTC, WM주얼리컴퍼니, WM푸드몰, WM힐빙테라피는 익산시 익산대로 514, <u>WMTC 익산지점</u>은 익산시 무왕로 893에 둔다.	제82조(학교기업의 소재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, <u>WMTC 익산지점, WM 베이커리는 익산시 무왕로 893에 둔다.</u>																
제83조(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) (생략) 1.~4. (생략) <신 설>	제83조(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)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WM베이커리는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와 연계하여 빵과 커피등 식품을 제조, 가공, 판매등의 사업을 한다.</u>																
제84조(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과 학점 및 교육과정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외식조리과, 식품영양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<u>WM푸드몰의 사업장을 이용하며, 학과 양·한식조리 실습실과 베이커리실습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.</u> 4. (생략) ② (생략) 1. WMTC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호텔관광과, 항공서비스과, 의료관광코디과, WM주얼리컴퍼니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주얼리디자인과, WM푸드몰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외식조리과, WM힐빙테라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미용피부테라피과, 미용피부관리과, <u>허브테라피향장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4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, 1학기당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</u> ③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외식조리과 <table border="1"> <tr> <td>1학년 1학기</td><td>1학년 2학기</td></tr> <tr> <td>한식조리기본실습</td><td>양식메인요리실습</td></tr> <tr> <td>3학점</td><td>3학점</td></tr> </table>	1학년 1학기	1학년 2학기	한식조리기본실습	양식메인요리실습	3학점	3학점	제84조(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과 학점 및 교육과정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-----<u>WM푸드몰, WM베이커리의 사업장을 이용하며, 학과 양·한식조리 실습실과 베이커리실습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.</u>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<u>허브테라피향장과, WM베이커리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외식조리과, 식품영양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4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, 1학기당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1학년 1학기</td><td>1학년 2학기</td></tr> <tr> <td>한식조리기본실습</td><td>양식메인요리실습</td></tr> <tr> <td>3학점</td><td>3학점</td></tr> <tr> <td><u>제과실습</u></td><td><u>제빵실습</u></td></tr> <tr> <td><u>3학점</u></td><td><u>3학점</u></td></tr> </table>	1학년 1학기	1학년 2학기	한식조리기본실습	양식메인요리실습	3학점	3학점	<u>제과실습</u>	<u>제빵실습</u>	<u>3학점</u>	<u>3학점</u>
1학년 1학기	1학년 2학기																
한식조리기본실습	양식메인요리실습																
3학점	3학점																
1학년 1학기	1학년 2학기																
한식조리기본실습	양식메인요리실습																
3학점	3학점																
<u>제과실습</u>	<u>제빵실습</u>																
<u>3학점</u>	<u>3학점</u>																

2학년 1학기	2학년 2학기
양식현장요리실습	한식현장요리실습
학점	학점

6. ~ 7. (생략)

<신 설>

2학년 1학기	2학년 2학기
양식현장요리실습	한식현장요리실습
학점	학점

6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식품영양과

1학년 1학기	1학년 2학기
제빵실습	제과빵 실습(II)
2학점	1학점

<신 설>

제 20 장 도서관

제89조(대학도서관 운영)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대학 도서관의 예산, 조직, 자료의 수집 및 관리,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, 기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 하도록 하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한다.

제90조(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우리대학은 5년 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
1.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3.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4.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5.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6.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우리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.

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2.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3.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4.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1조(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)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.

	제92조(사서 등) ①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<u>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전문 사서를 배치한다.</u> ②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·훈련 시 <u>간을 이수하도록 한다.</u> 제93조(시설 및 도서관자료) ① 도서관의 시설은 대학도서관 <u>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자료를 충족하도</u> <u>록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 한다.</u>
	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5조에 관 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개편 및 변경) ① 전투부사관과와 정보특전부사관 과를 통합하여 2017학년도부터 전투부사관과로 한다. 제3조(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정보특전부사관과는 2017학년도말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 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 는 전투부사관과과 소속으로 한다.